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 국세청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Index

순서

0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02 감사인 지정방식

03 감사인 지정절차

0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05 주요 Q&A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1-1. 제도 개요(상증법 §50④)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19년 상증세법 개정)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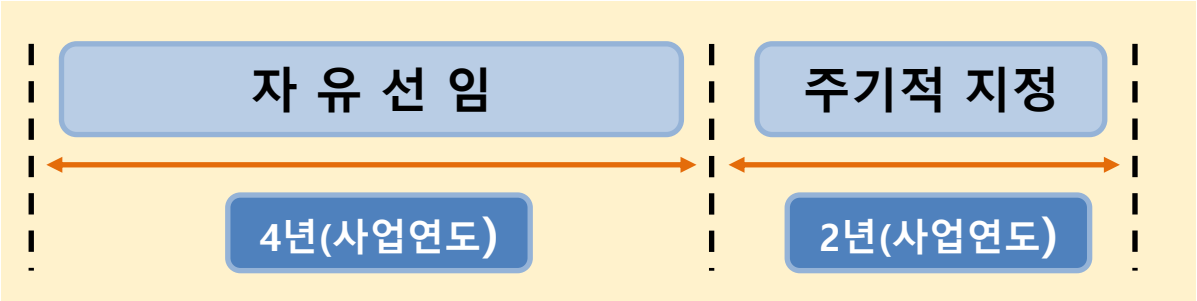

*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 (상증법 부칙 제 16846호 § 7②, '19.12.31.)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1-2. 지정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2)

(지정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지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예시)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2023.1.1~12.31인 경우

- 2021.12.31.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지정대상을 판단하며, 이때 지정기준일은 2022.11.15임

※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개정부칙] '22.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지정대상) **직전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

☞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2022.3.1.~2023.2.28.인 경우

- 2021.2.28. 총자산가액으로 지정대상을 판단하며, 이때 지정기준일은 2022.7.15임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1-2. 지정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2)

지정 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연기 (상증칙 §14의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게됨 ① 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사업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사업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사업연도 직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②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감리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지정감사인을 지정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 상증칙 시행(3.18.)전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 연기 가능 [해당 공익법인은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2. 감사인 지정방식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2-1. 감사인 지정방식

» **(지정기준)**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은 다음연도에 우선 지정하며, 해당 사업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지정

» **(분산지정)** 매 사업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사업연도별도 안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예시) 지정대상 공익법인이 총30개인 경우, 지정대상 첫 번째 사업연도에 분산하여 5개(6개년 연평균)를 지정할 수 있음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2-1. 감사인 지정방식

- **(지정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각 감사인별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점수 등을 고려하여 상증착에 따라 산정

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 $(1 + 3^n)$

*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동일 감사인 지정)** 지정대상 두 번째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업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을 다시 지정

- **(직전 감사인 회피)** 지정대상 첫 번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선임 했던 감사인은 지정 회피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2-1. 감사인 지정 예시

각 회계법인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 순으로 배열

Ⅰ법인 220,000점, Ⅱ법인 90,000점, Ⅲ법인 50,000점

1순위 : Ⅰ법인(220,000점)
2순위 : Ⅱ법인(90,000점)
3순위 : Ⅰ법인(55,000점=220,000/4)
4순위 : Ⅲ법인(50,000점)
5순위 : Ⅱ법인(22,500점=90,000/4)

지정대상 공익법인		
자산규모 ↓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A공익	2조원
	B공익	1조원
	C공익	9천억원
	D공익	5천억원
	E공익	3천억원

지정 감사인		
회계법인	지정점수	지정점수 ↓
Ⅰ법인	220,000점	
Ⅱ법인	90,000점	
Ⅰ법인	55,000점	
Ⅲ법인	50,000점	
Ⅱ법인	22,500점	

3. 감사인 지정절차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3-1. 지정절차 및 일정

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 Ⅰ

(2022사업연도-12월 결산 공익법인 기준)

'22.3.1.~3.14.	'22.4.18.까지	'22.5.2.까지	'22.5.16.까지	'22.5.30.까지
-지정 기초자료 (공익법인 제출) -지정감사인 신청서 (감사인 제출)	지정감사인 예정통지	예정통지 의견제출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감사계약 체결
공익법인 · 감사인 →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 · 감사인	공익법인 · 감사인 →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 · 감사인	공익법인 · 감사인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 시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진행

(예시 : 2월말 결산을 하는 산학협력단의 자료제출 기간은 5.1.~5.16.)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3-1. 지정절차 및 일정

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 Ⅰ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공익법인 기준)

'22.9.1.~9.14.	'22.10.18.까지	'22.11.1.까지	'22.11.15.까지	'22.11.29.까지
- 지정 기초자료 (공익법인 제출) - 지정감사인 신청서 (감사인 제출)	지정감사인 예정통지	예정통지 의견제출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감사계약 체결
공익법인 · 감사인 →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 · 감사인	공익법인 · 감사인 →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 · 감사인	공익법인 · 감사인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매 사업연도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진행

(예시 : 2월말 결산을 하는 산학협력단의 자료제출 기간은 11.1.~11.14.)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3-2. 지정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

* 총자산가액, 최근 4년 감사인 선임방법, '21 사업연도 감사인 등 기재

자료제출 면제

공익법인은 지정대상인 2개 사업연도 중 두 번째 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에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총 4개 사업연도)

☞ (예시) 2022사업연도, 2023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 2024사업연도 ~ 2027사업연도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3-2. 지정기초자료 제출

[개정부칙] '22.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공익법인]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내에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2 사업연도,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경우 2022.3.1~3.14.
- 2022 사업연도, 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경우 2022.5.1~5.16.(공휴일의 다음날)
- 2022 사업연도, 6월 결산 공익법인의 경우 2022.9.1~9.14.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식

(예시 : '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_12월 결산법인)

► '20.12.31.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기재

주의 공익법인 전체 기준 (수익사업 포함)

► '18~'21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방법 기재

주의 당기는 '21년을 의미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당기 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 계약서상 감사대상 사업연도를 기재

(예시) 2년 계약시 2021.1.1.~2022.12.31

► '20.12.31.현재 총자산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등 제출

* '20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거나 홈택스에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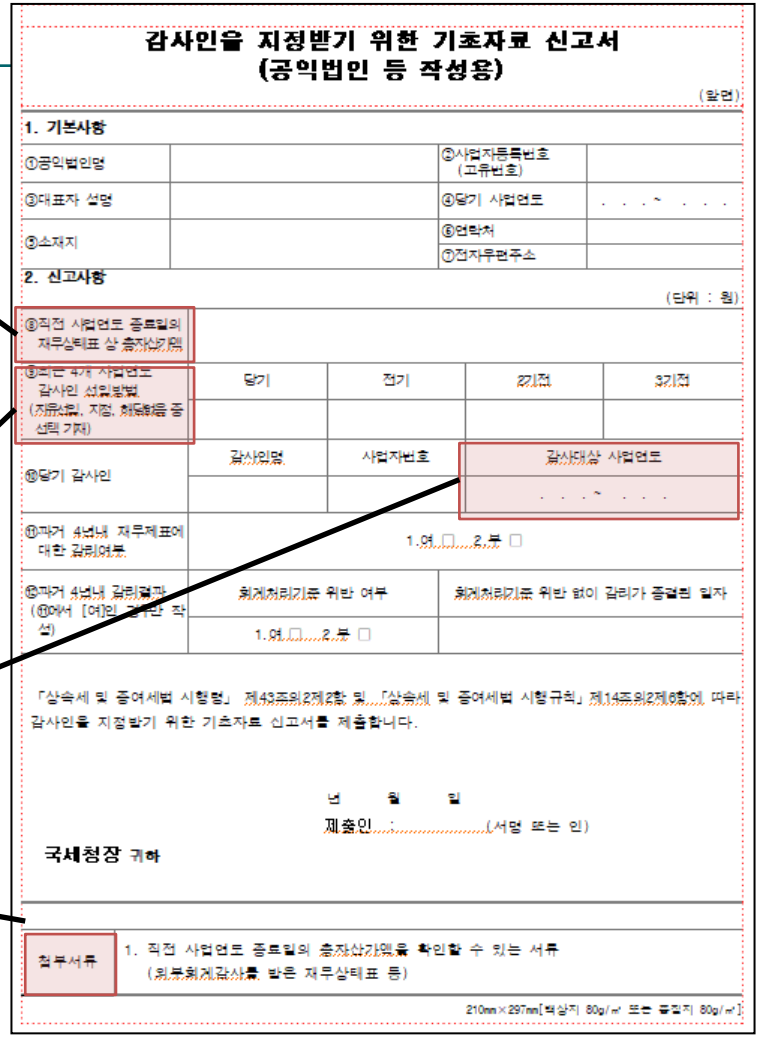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공익법인 등 작성용)

(앞면)

1. 기본사항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당기 사업연도	. . . ~ . . .
⑤소재지		⑥연락처	
		⑦전자우편주소	

2. 신고사항

(단위 : 원)

⑧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				
⑨최근 4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방법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 중 선택 기재)	당기	전기	2기전	3기전
⑩당기 감사인	감사인명	사업자번호	감사대상 사업연도	
			. . . ~ . . .	
⑪과거 4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여부	1.여 □ 2.부 □			
⑫과거 4년내 감리결과 (⑪에서 「여」인 경우만 작성)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	
	1.여 □ 2.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3-3.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예정통지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지정 예정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전까지 지정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 * 지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22.12.31. 속하는 사업연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지정하려는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 부터 2주 이내에 의견제출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음

의견제출 사유

1. 지정감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과 감사인간 이견이 큰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직업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 감사인이 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예정통지 의견제출 서식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공익법인 뿐만아니라 감사인도 제출 가능(제출인 선택)

►국세청으로부터 예정통지 받은 내용을 기재

►어떤 이유로 의견제출을 하는 것인지 선택 (세부내용은 ④란에 상세하게 기재)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인	공익법인명 (감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①제출인 구분	1.공익법인 ☐ 2.감사인 ☐		
②지정예정통지 내용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예정 통지된 감사인	지정예정 통지를 받은 날
			. . .
③의견제출 사유 (1-3 중 선택)	1.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④의견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견제출 상세 내용(필요시 작성·제출)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3-4. 확정통지 및 재지정 요청

확정통지	국세청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문서로 통지
감사계약 체결	- 공익법인과 지정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감사인)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서사본을 국세청에 제출 - **공익법인**은 재지정 요청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감사인 지정을 요청 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재지정 요청 사유	①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② 지정감사인이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재지정 요청 서식

►재지정 요청서 제출은 공익법인만 가능
주의 감사인은 재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국세청으로부터 확정통지 받은 내용을 기재

►어떤 이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것인지 선택 (세부내용은 ③란에 상세하게 기재)
주의 1~2사유 외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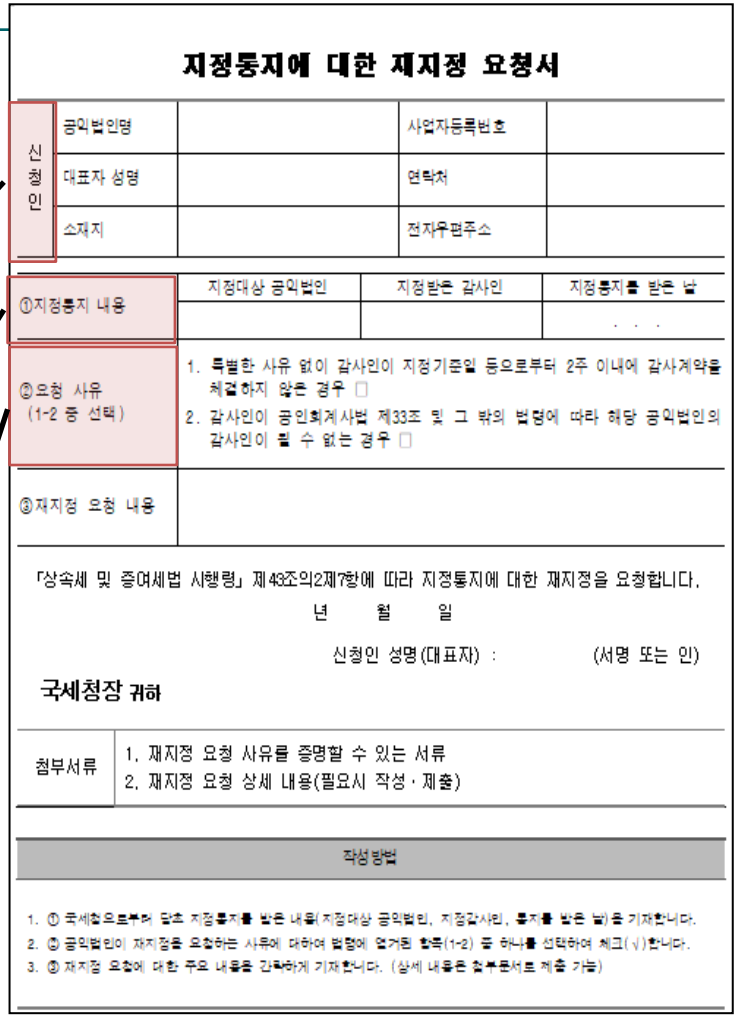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

신청인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①지정통지 내용	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받은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은 날
			. . .

②요청 사유 (1-2 중 선택)
1.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이 지정기준일 등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③재지정 요청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지정 요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지정 요청 상세 내용(필요시 작성·제출)

작성방법

1. ① 국세청으로부터 당초 지정통지를 받은 내용(지정대상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2. ② 공익법인이 재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열거된 항목(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3. ③ 재지정 요청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로 제출 가능)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4-1. 감사인 신청

감사인 신청

지정을 원하는 감사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 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 신청서*」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

* 한공회가 정하는 감사실무교육 이수실적, 공익법인 회계감사실적 등 기재

신청요건

1. 과거 2년내*에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공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 (기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로부터
2. 과거 5년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실적이 있을 것
   * (기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정부칙] '22.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감사인] '22.3.1.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3.14.까지 제출)

[신청요건] 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내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실적이 있을 것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4-2. 감사인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확정, 재지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회계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 등에 통보된 자
4.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4-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 $(1+3^n)$

*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①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 (가)+(나) [매년 9월1일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

(가) 각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 점수*를 합산

(나) 과거 2년 이내에 한공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수 x 110점

*[15년이상] 120점 / [10년이상] 115점 / [6년이상] 110점 / [2년이상] 100점 / [2년미만] 80점

②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 매년 10.1.~익년 9.30.까지 지정받은 개수

[개정부칙] '22.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22.3.1.기준으로 소속된 공인회계사 기준 적용
- 한공회가 정하는 감사실무교육 이수점수 반영하지 않음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22.4.1.~ '23.3.31.까지 지정받은 개수 적용

※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함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4-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두 개이상 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

적용 기준

1. 각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 합계
2.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감사인
3.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지정감사인 신청서식

(예시 : '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내 교육이수 실적

주의 22.3.1. 기준 소속 공인회계사 기준 (수습공인회계사 미포함)

► 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실적

㉮ 감사인의 사업연도 구분
(예시) '22.3월 결산 회계법인
(1년 이내) '20.4.1.~'21.3.31, (1~2년 이내) '19.4.1.~'20.3.31.

㉯ 위 ㉮에 따른 감사인의 사업연도별로 공익법인 결산일이 도래한 감사실적 기재
(예시) 공익법인 결산일이 '20.12.31.인 경우 [1년이내]로 분류

► ㉮에 따른 각 사업연도별로 총자산가액이 가장 큰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1건씩만 제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지정감사인 신청서

신청인	감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단위 : 명, 건)

감사인 신청 건	① 공익법인 감사실무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 (9월 1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이전				
	②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건수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4년 이내	4년~5년 이내

※ 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가 3명 이상 이거나 ②에 따른 회계감사 실적이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 등) 3.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에 따른 각 구분기간별로 총자산가액이 가장 큰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1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부표1에 따른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지정감사인 신청서식(부표)

(예시 : '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 '22.3.1.기준으로 소속된 공인회계사수 기재
주의 수습공인회계사 미포함

► '22.3.1.기준으로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을 구분 집계하여 기재

► [대량자료]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표준양식(엑셀)을 작성하여, 전자파일로 업로드 제출

순번	감사인 (필수 입력)	성명 (필수 입력)	등록번호 (필수 입력)	경력기간	
				공인회계사의 경력일수 (실무수습후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필수 입력)	구분(필수 입력) 01: 2년 미만 02: 2년 이상 06: 6년 이상 10: 10년 이상 15: 15년 이상
1	좋은법인	홍길동	12345	10	01
2					
3					
4					
5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감사인 작성용)

(앞면)

1. 기본사항

①감사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연락처	
⑤소재지		⑥전자우편주소	

2. 신고사항

(단위 : 명)

⑦ 9월 1일 현재 소속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는 포함하지 않음)						
⑧ 9월 1일 현재 경력기간별 감사가능 공인회계사 수	합계	15년 이상 (1인당 120점)	10년 이상 (1인당 115점)	6년 이상 (1인당 110점)	2년 이상 (1인당 100점)	2년 미만 (1인당 80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자료

작성방법

1. 기본사항(①~⑥)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 신고사항(⑦~⑧)
가. ⑦소속 공인회계사 합계는 산정기준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심무수습 등을 이수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합니다.
(수습 공인회계사는 포함하지 않음)
나. ⑧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는 경력기간별로 산정기준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감사가능 등록 공인회계사 수를 기재합니다.

5. 주요 Q&A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1. 감사인 지정대상(4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판단방법

시행 첫해 감사인 지정을 받는데, 자유선임 4개 사업연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4개 사업연도는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18~ '21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경우, '22~'23 사업연도는 지정대상에 해당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2.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22년 선정 여부)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22년에 모두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정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특정 연도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서대로 분산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3.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자유선임 계약 시 감사인 지정 여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인 지정 연기가 가능한지?

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 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대상 사업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사업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지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상증칙 시행일(3.18.)전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연기 가능 [해당 공익법인은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4. 분산지정으로 감사인 지정 시 자유선임 계약

분산지정으로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이 2년 계약으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동 기간 중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분산지정으로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은 자유선임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5. 공익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은 지정기초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든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기초자료 제출기간은 3.1.~3.14.이며,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공익법인>공익법인주기적감사인지정제도>감사인지정을위한 기초자료신고서(별지35호서식)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방법

: 홈택스(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신청 / 제출>주기적 감사인>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② 우편 제출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30128),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담당]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6. 감사인 지정배제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당 사업연도(지정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되므로, 지정기초자료 작성시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인으로 선임하였거나 선임예정인 감사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7. 감사인 지정방법

감사인으로 지정되는 회계법인 등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감사인별로「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부터 총자산가액이 큰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합니다. (감사인 한 곳을 정하여 지정통지)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지정 방식
3. 감사인 지정 절차
4. 지정감사인 신청방법
5. 주요 Q&A

5. 주요 Q&A

Q8. 지정감사인과의 보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 받은 감사인과 보수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견제출] 예정통지를 받은 지정대상 공익법인과 지정하려는 감사인은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요청] 확정통지를 받은 공익법인은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지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통지를 받은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이 재배정이 되지 않으며, 지정감사인에서 제외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